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. 3. 13 선고 2014가합10273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피 고 F

변론 종결 2015. 2. 27.

판결 선고 2015. 3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아산시 G 대 7,18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가, 나, 다, 라,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ㄱ)

부분 지상 목조 스톤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,

나.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마, 바, 사, 아, 자, 차, 카, 타,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

선내 (나) 부분 1,108㎡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아산시 H 대 1,108㎡ 외 10필지의 토지는 충남 아산시 G 대 853㎡에 합병되어 아산시 G 대 7,187㎡(이하 이 합병 후 토지를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가 되었다.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1/5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합병 전 H 토지 부분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항기재 무허가주택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2013. 10. 6. 이로부터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, 이 사건 건물은 약 50년 전에 F 혹은 그 아버지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위 합병 전 H 토지의 당시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하였고, 이후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전전 양도되어 피고가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사용대차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심준보, 판사 김성환, 판사 김종찬

도현

충남 아산시 G 대 7,187㎡ (아래의 도면에는 합병 전 지번으로 표시됨)



